#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40

발의연월일: 2021. 3. 23.

발 의 자 : 허 영 · 이학영 · 김정호

김주영 • 박상혁 • 오영환

이용우 · 김상희 · 진선미

홍기원 · 이광재 · 김성환

박홍근 · 전용기 · 이소영

이규민・맹성규・유정주

김승원 의원(19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야생동물의 죽음을 방지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나,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·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.

최근 투명방음벽, 투명창 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및 기타 구조 물에 조류 등의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폐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에도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야생동물의 폐사를 방 지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음.

이에 환경부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· 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 여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2(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조사) ① 환경부장관은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·추 락의 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관 리하여야 한다.
  - ②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· 기록 및 관리업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.
  -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·기록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및 구조물 등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방지제품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

요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준비행위)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·기록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수 있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8조의2(인공구조물로 인한 야 생동물의 피해조사) ① 환경부 장관은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・추락의 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②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조사・기록 및 관리업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조사・기록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장과 시·도지사에게 협조를요청할 수 있다.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조사 결과 야생동물의 피해가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건물 및 구조물 등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방지제품

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에 필요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